

●문화재청고시 제2024-90호

사적 「서울 독립문」 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024년 04월 12일

문화재청장

**사적 「서울 독립문」 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서울 독립문」 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사적 「서울 독립문」 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지정종류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서울 독립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번지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스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번지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번지
	만해 한용운 심우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9길 24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9길 49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9길 49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42-3번지
	서울 우정총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9
	서울 대한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21번지
	구 서울대학교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구 공업전습소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69-1번지
	서울 이화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1길 32 등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64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64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64
	안국동 윤보선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8-1번지 등
	서울 경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 108-1번지
	환구단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번지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8
	서울 한국은행 본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서울 약현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49-2번지
	서울 정동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2-2번지
	서울 명동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1번지
	구 서울역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
	대구 계산동성당	대구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창원 진해우체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통신동)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80 (동인동2가)
	구 도립대구병원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2가)

나. 관련근거

-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예규)에 따라 처리함.
-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

-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고
- 2)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고시이력 참고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8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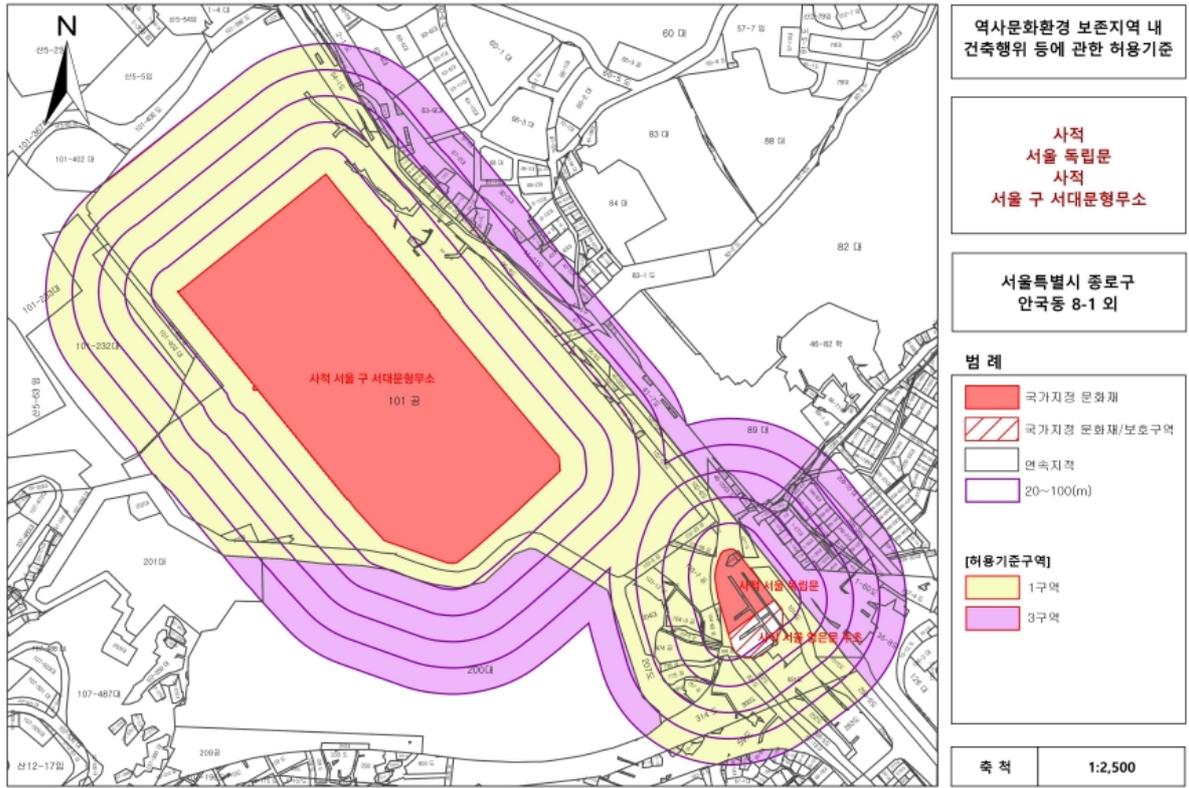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3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330-1130 / 팩스 02-330-1430
- 주소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3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진흥과 : 전화 02-2199-7248 / 팩스 02-2199-5670
- 주소 : (우 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 전화 02-3396-5844 / 팩스 02-3396-8629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6층 건축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34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8층 문화과 (수송동)
-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과 : 전화 053-661-2193 / 팩스 053-661-2199
- 주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인동2가)
- 경상남도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6 / 팩스 055-225-4795
- 주소 :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문화유산육성과 (용호동)

[붙임] 사적 「서울 독립문」 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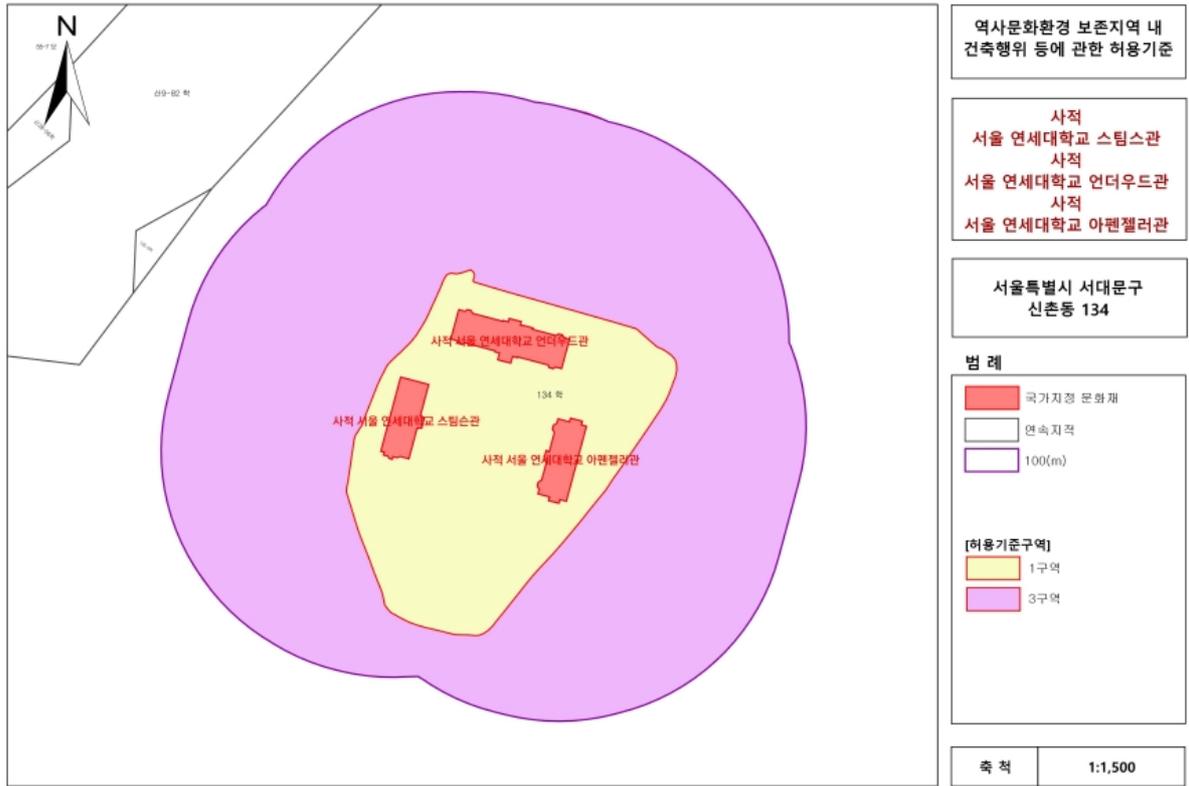
□ 사적 「서울 독립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기존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 사적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스관」,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기존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기존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사적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번지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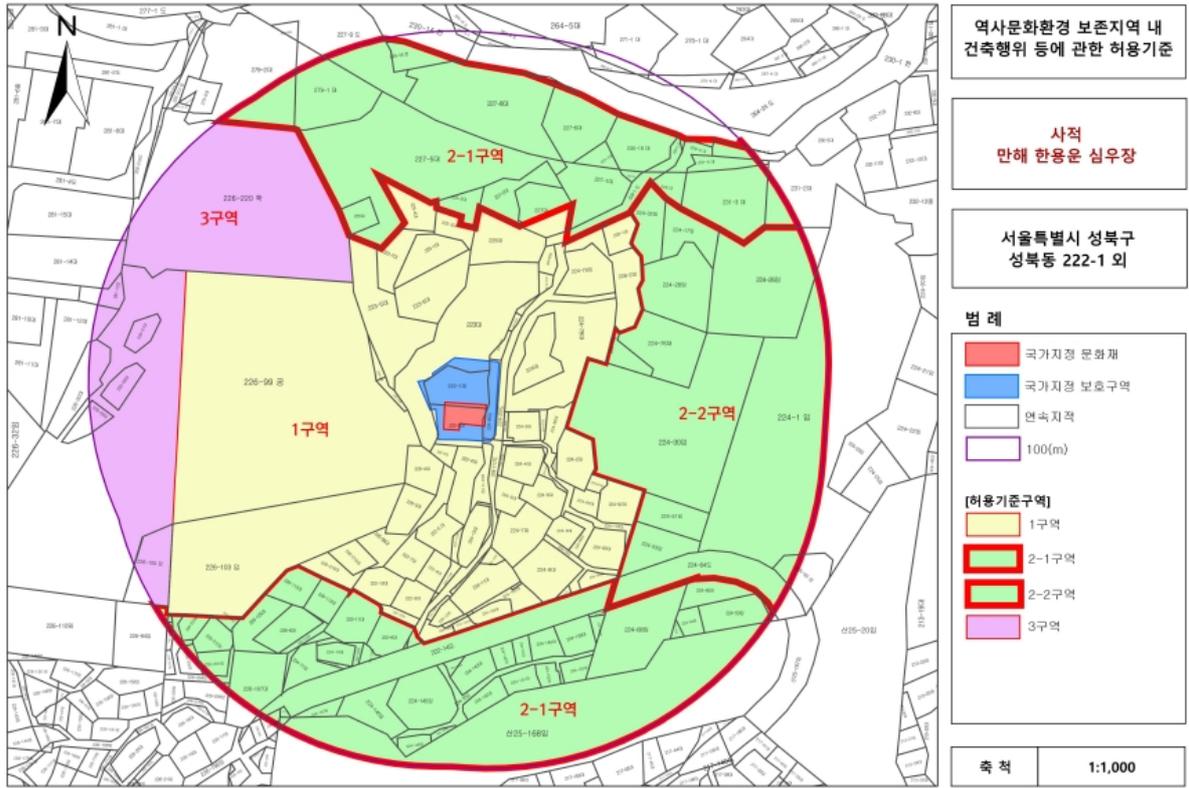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3구역

축척 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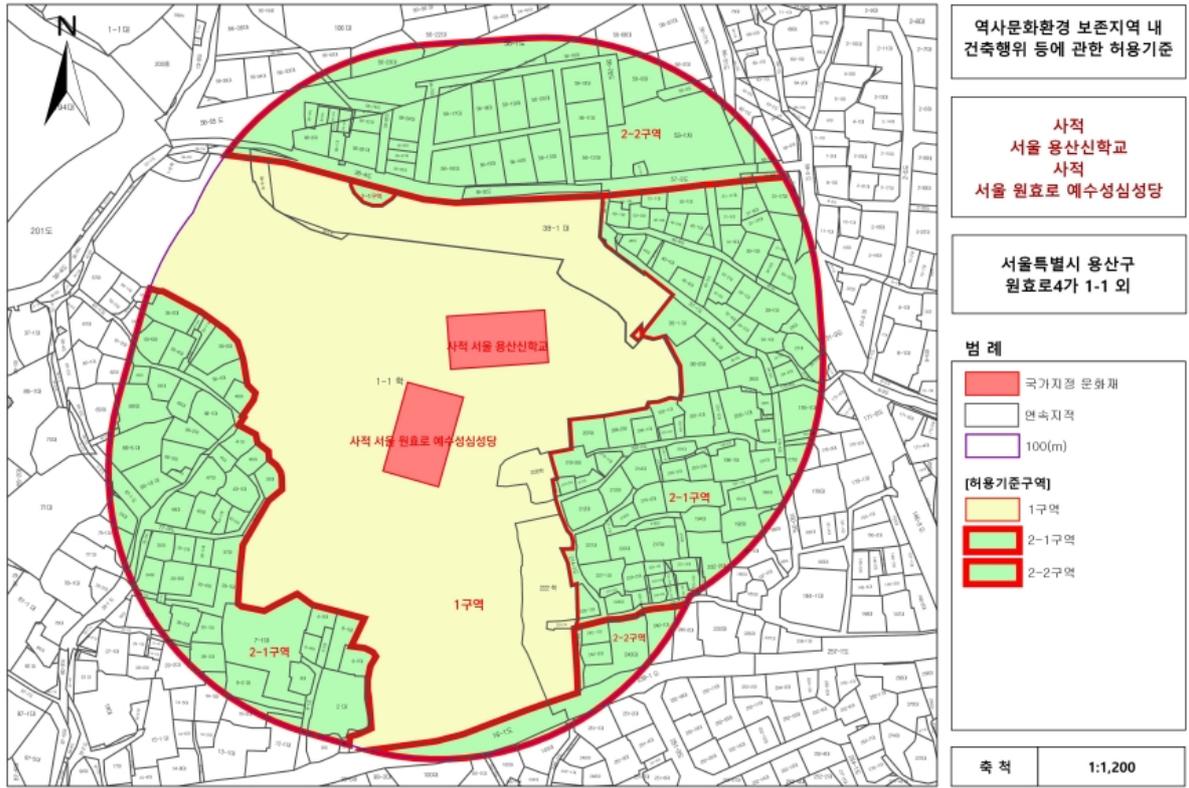
□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 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2m 이하	최고높이 16m 이하
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1구역, 2-1구역)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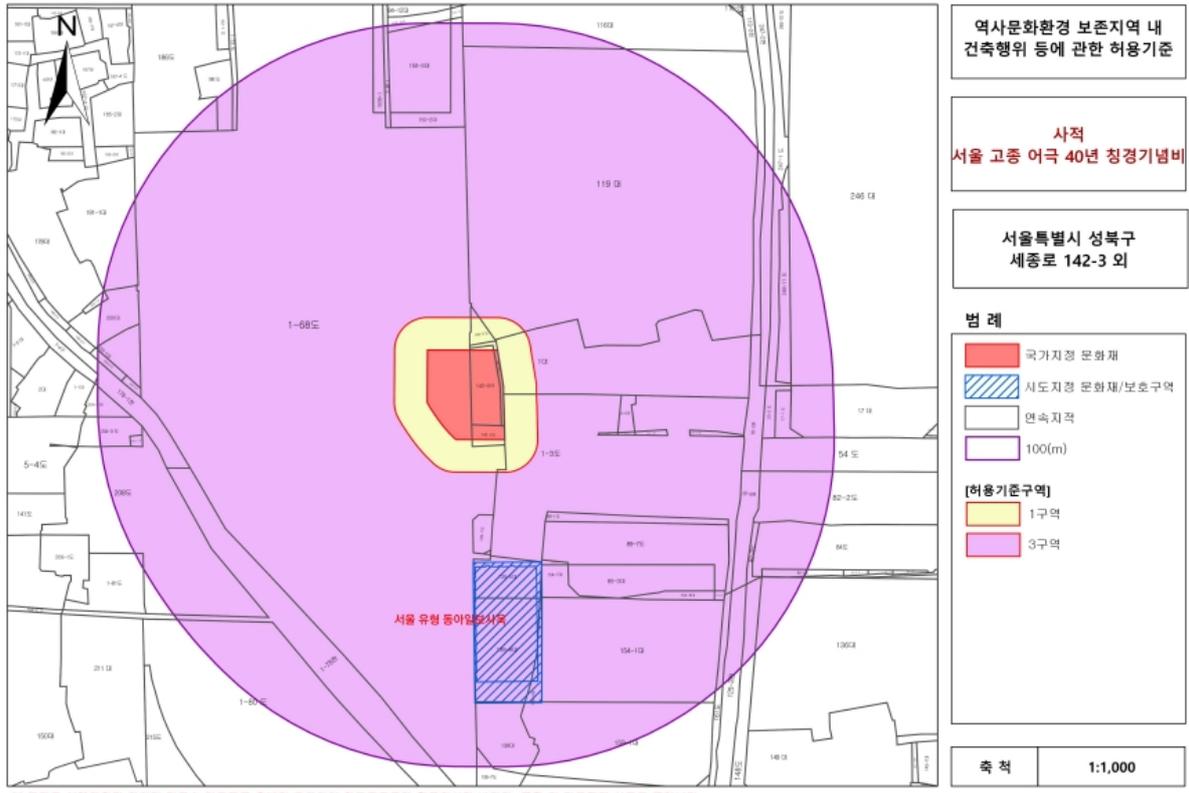
□ 사적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 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2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 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전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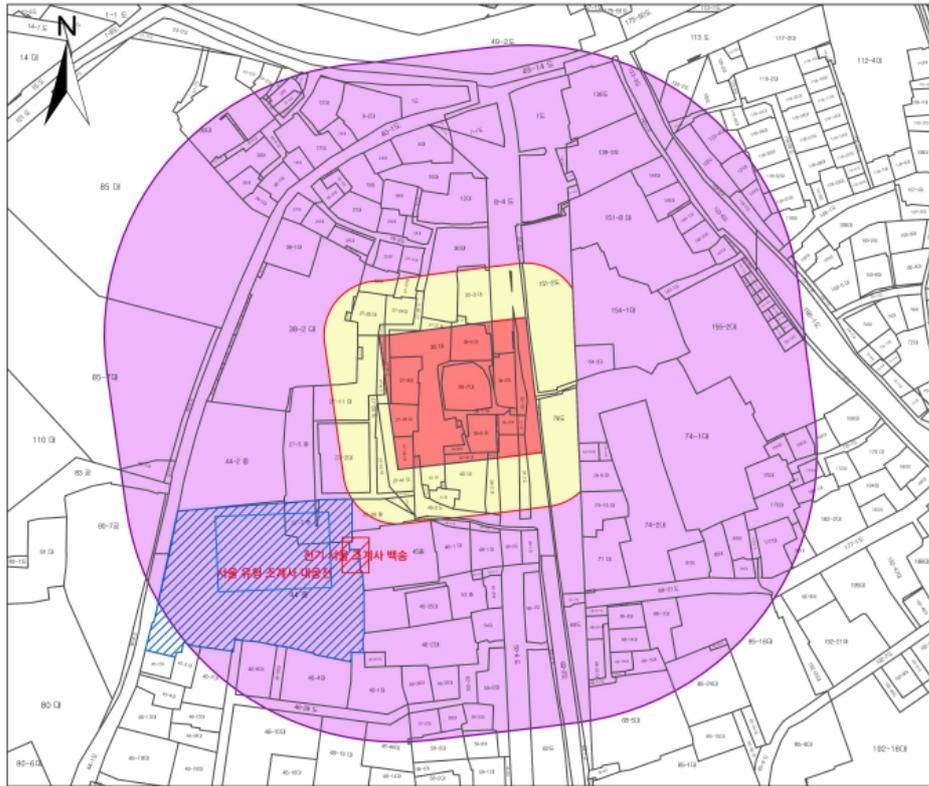
□ 사적 「서울 고종 어극 40년 청경기념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서울 우정총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서울 우정총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지동 397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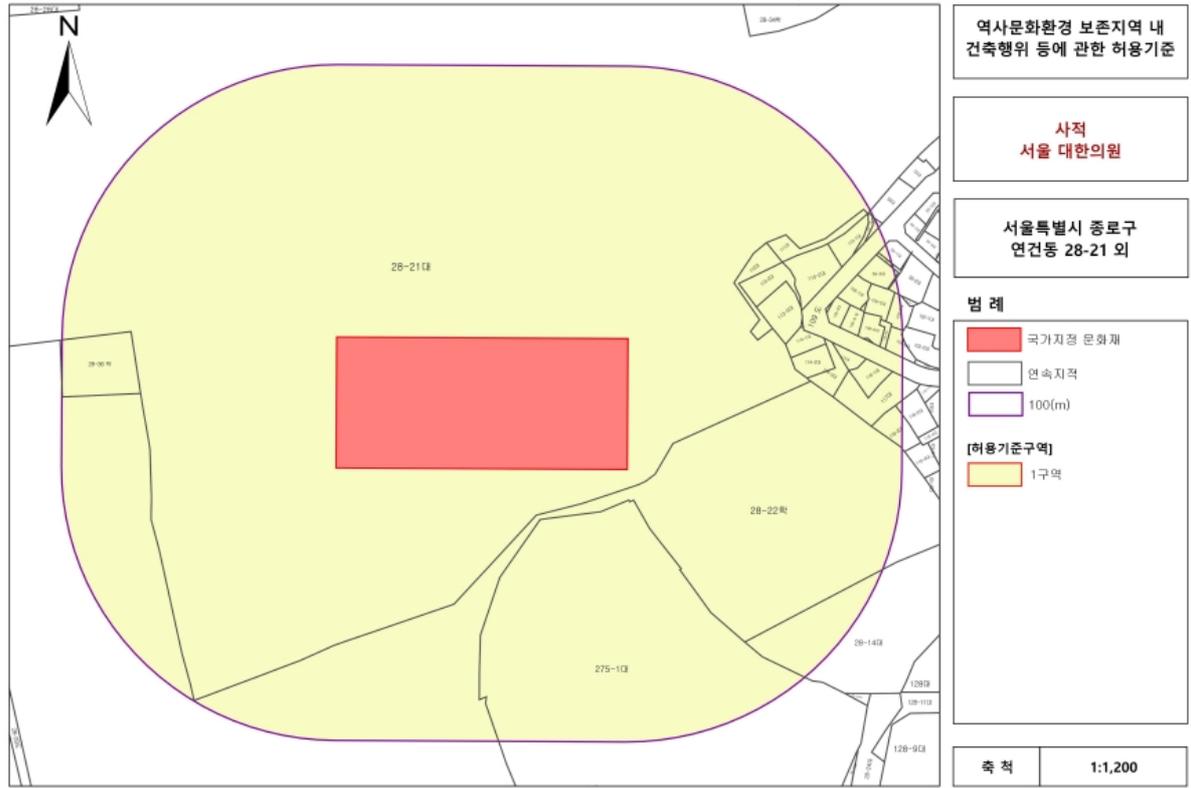
-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3구역

축척 1:1,2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이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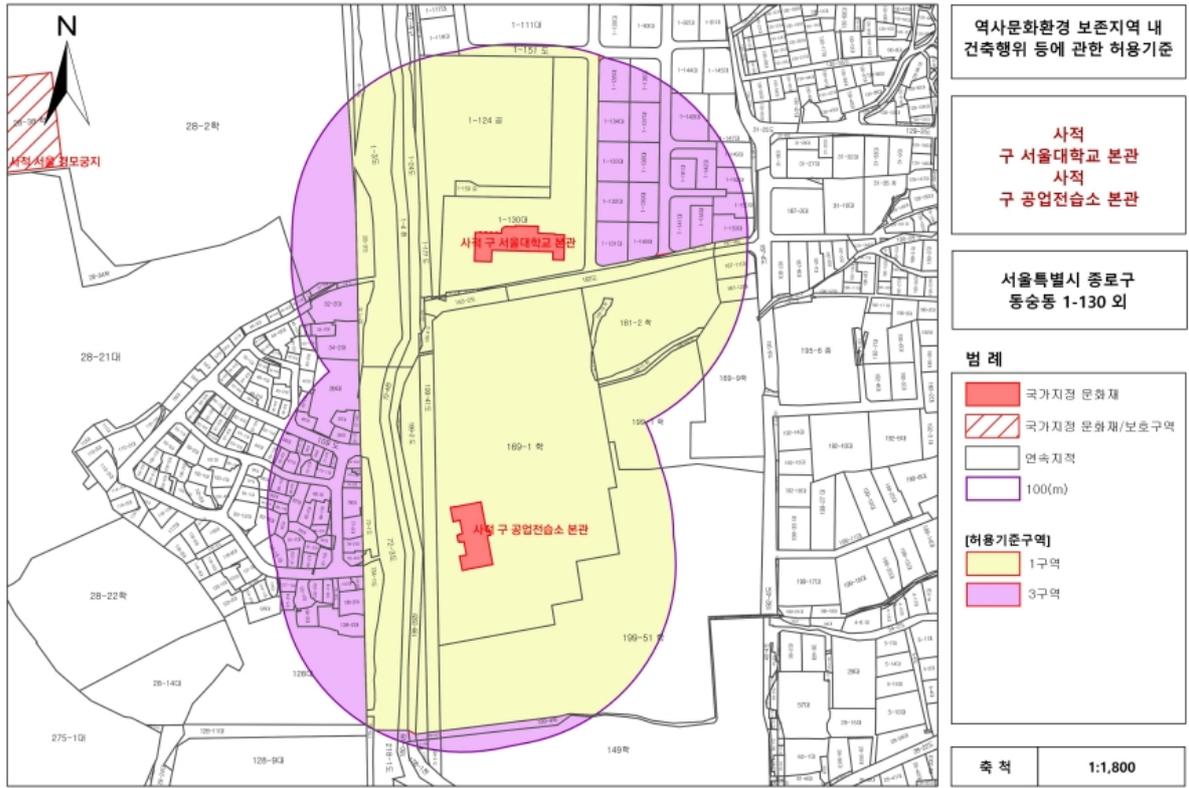
□ 사적 「서울 대한의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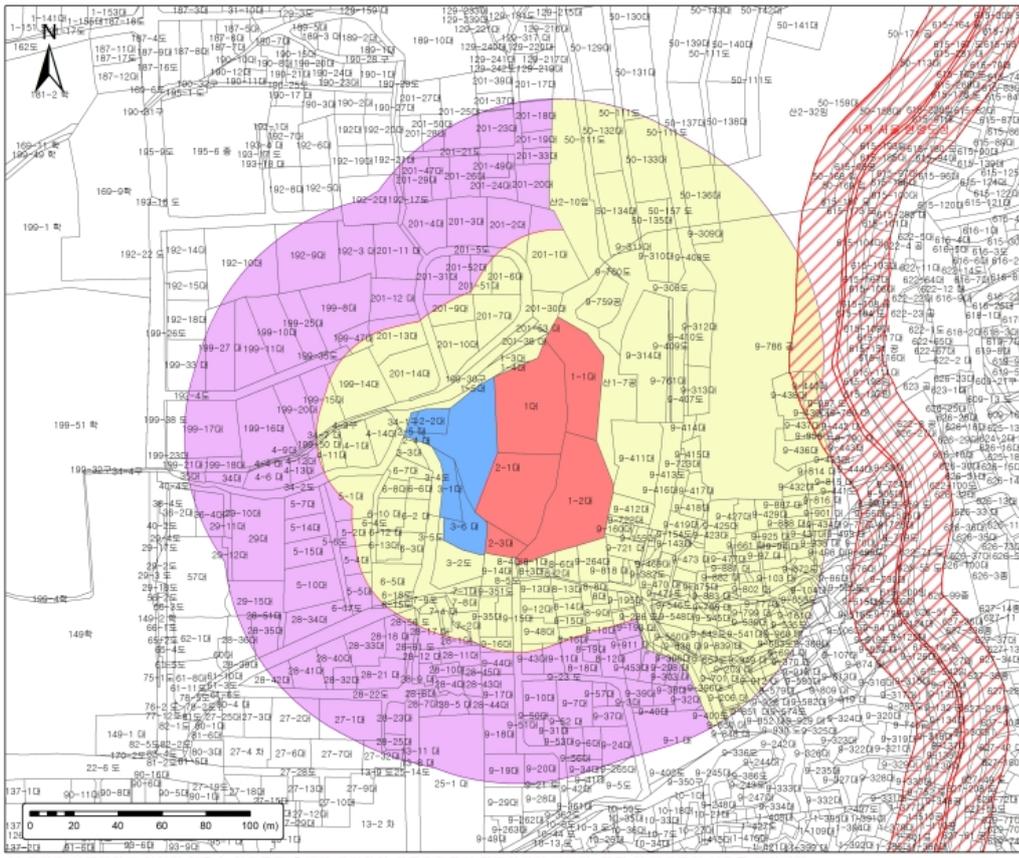
□ 사적 「구 서울대학교 본관」, 「구 공업전습소 본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서울 이화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서울 이화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1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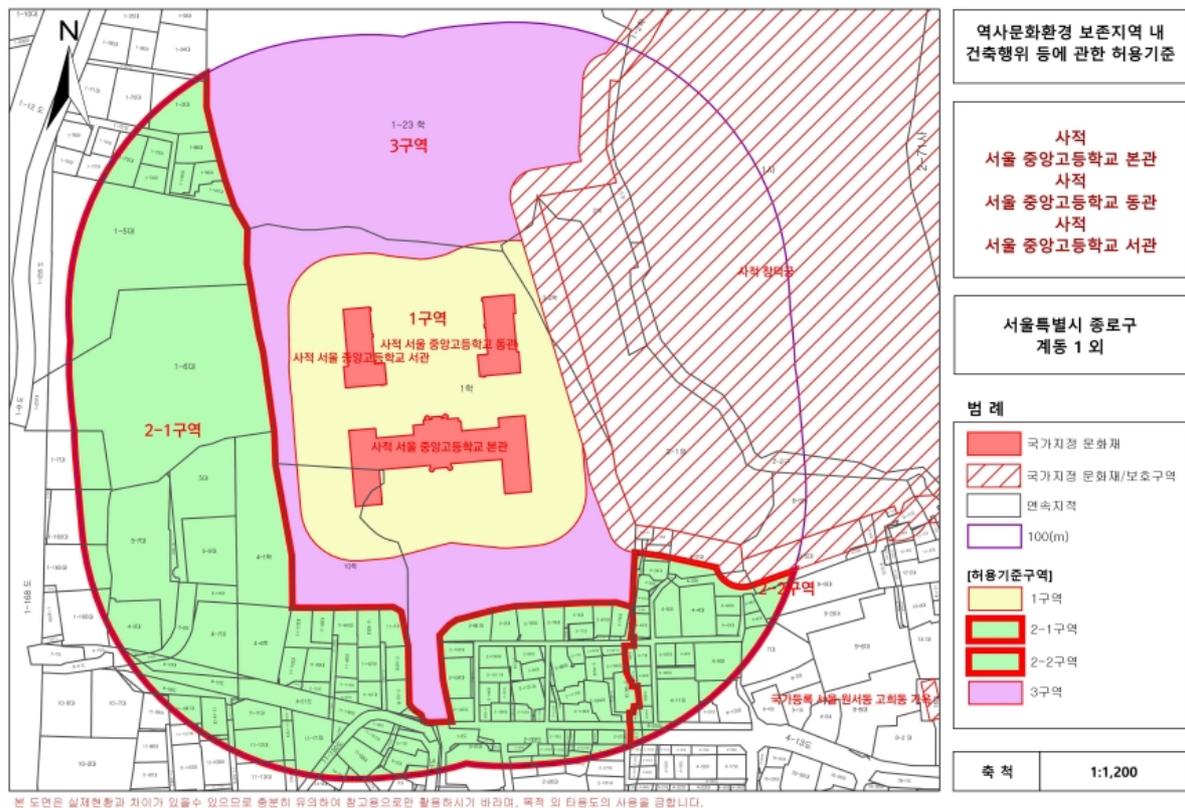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3구역

축척 1:1,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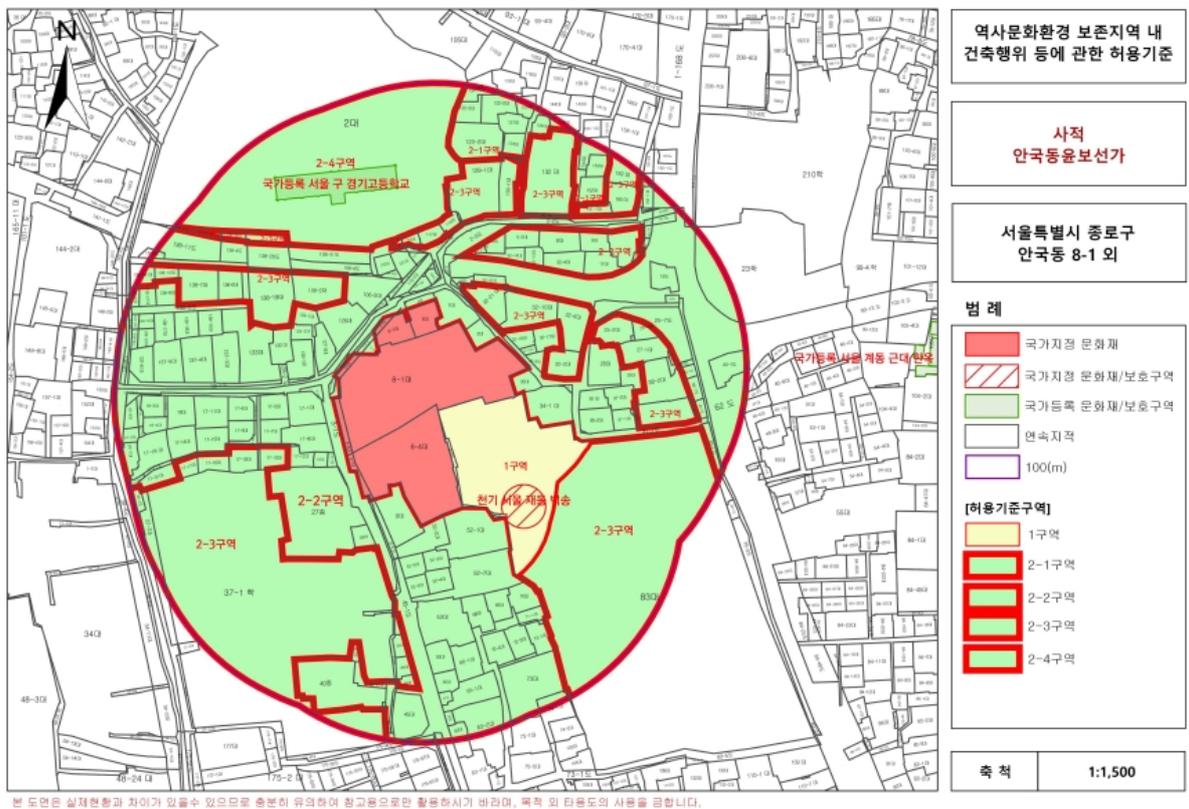
□ 사적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안국동 윤보선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2-1	최고높이 4m 이하	최고높이 6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2-3	최고높이 12m 이하	
	2-4	표고 30m 이상 - 최고높이 8m 이하 표고 50m 이상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촌지구단위계획,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4,5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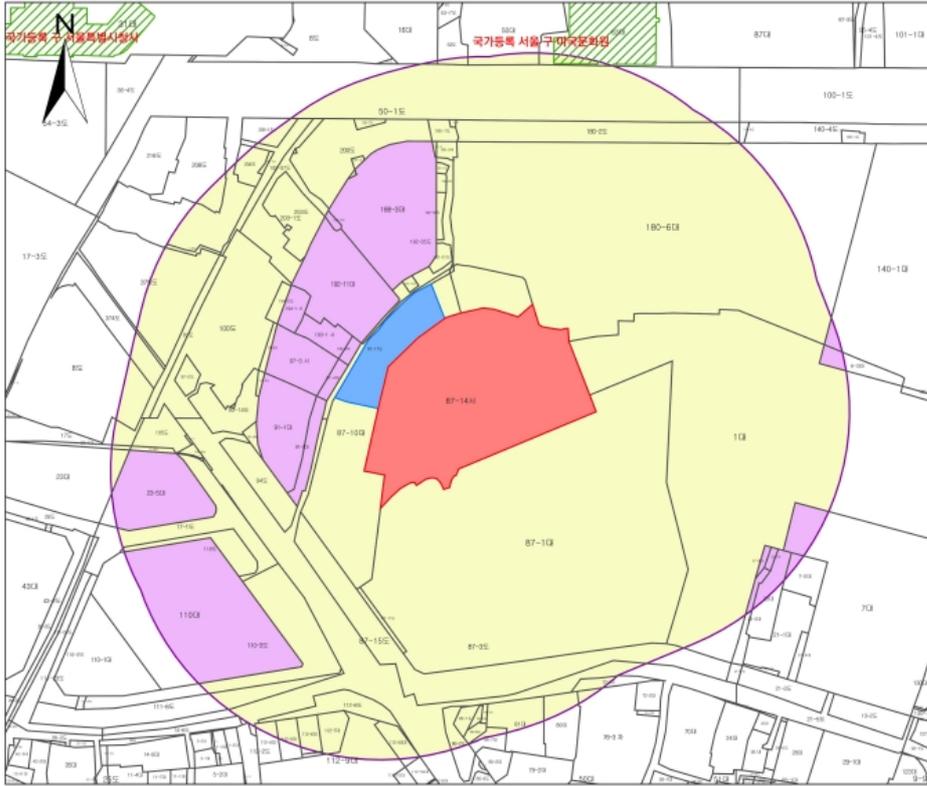
□ 사적 「서울 경교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기존 도면 변화 없음

□ 사적 「환구단」,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 한국은행 본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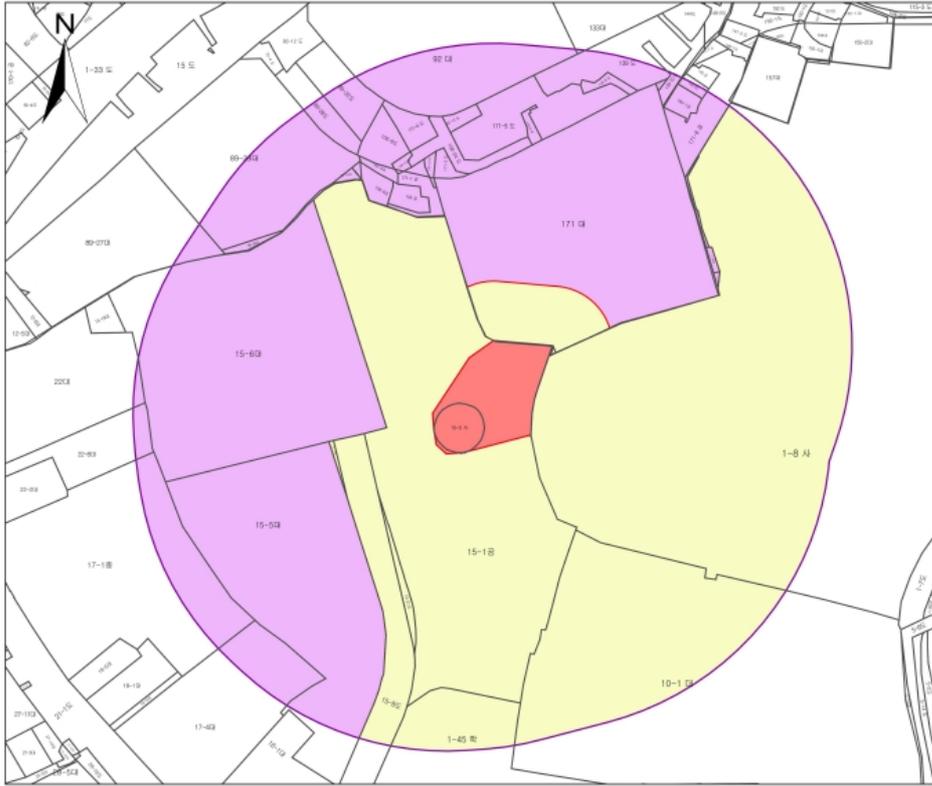
사적
한구단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87-1외

-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국가등록 문화재
 - 연속지적
 - 1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3구역

축척 1:1,3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 중구
정동 15-1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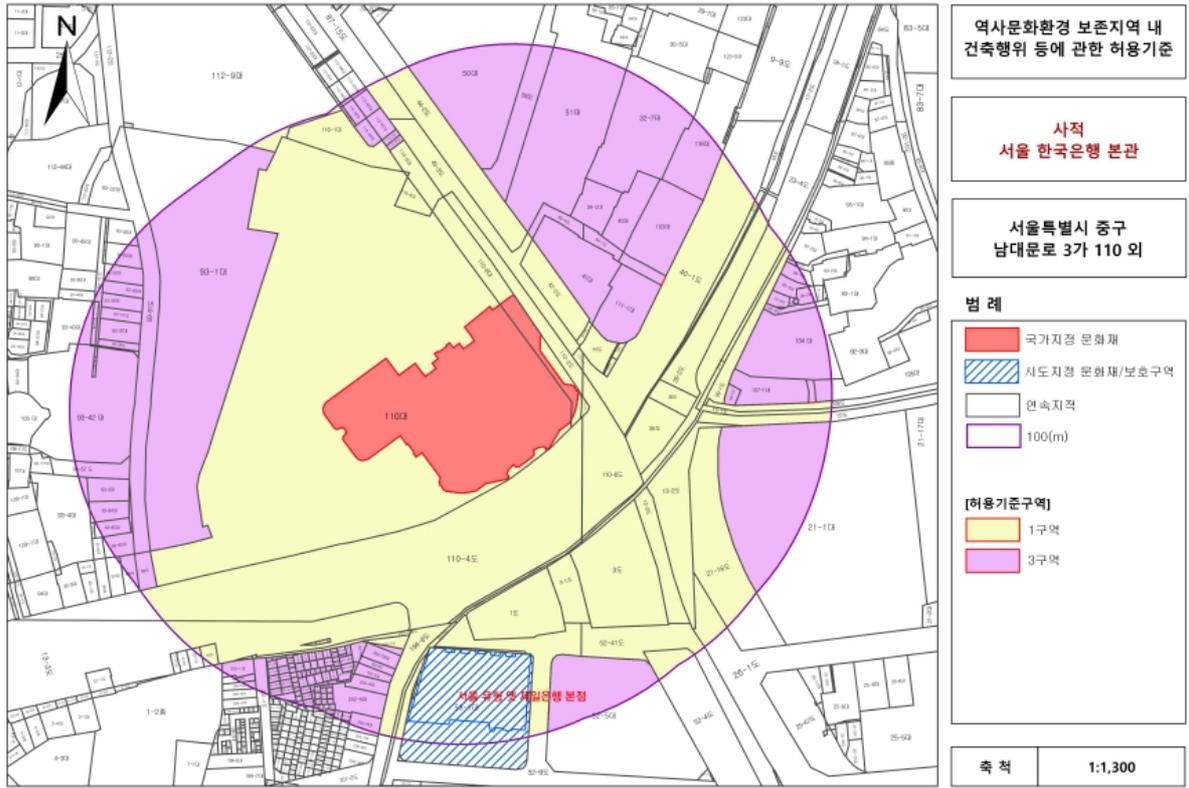
- 국가지정 문화재
- 연속지적
- 1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3구역

축척 1: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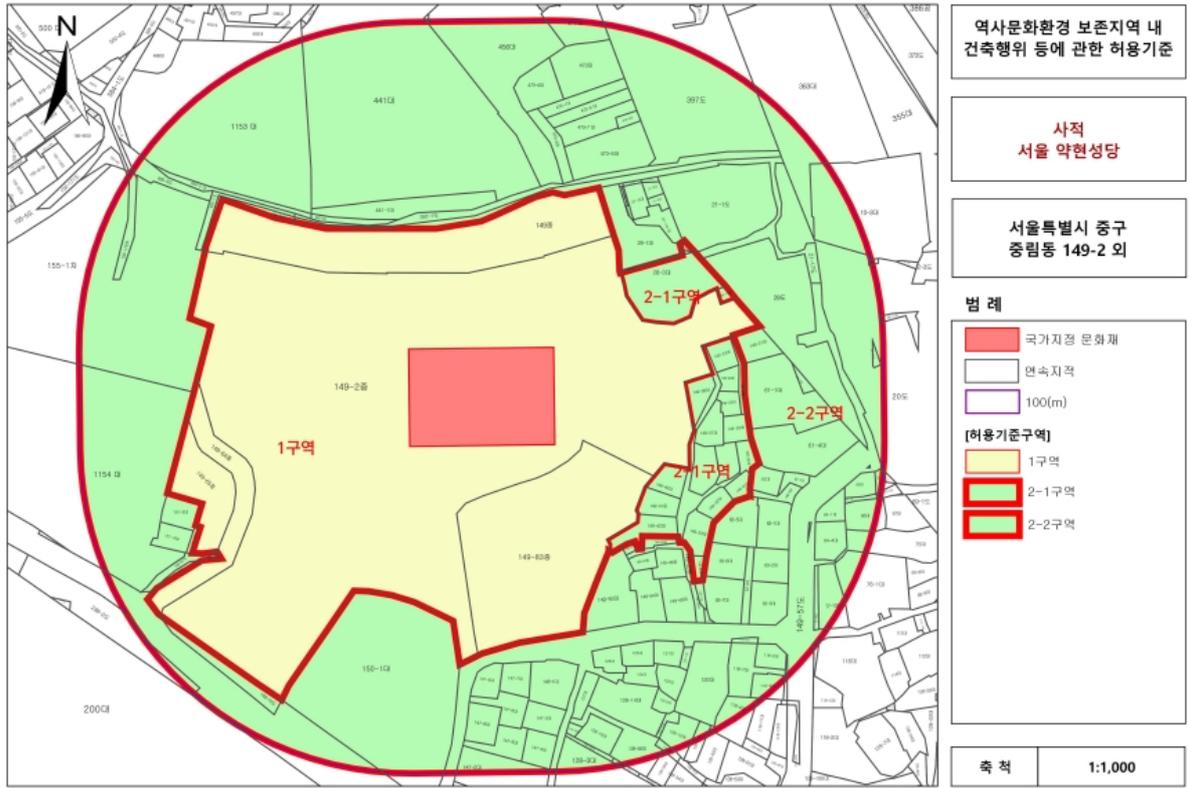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축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사적 「서울 약현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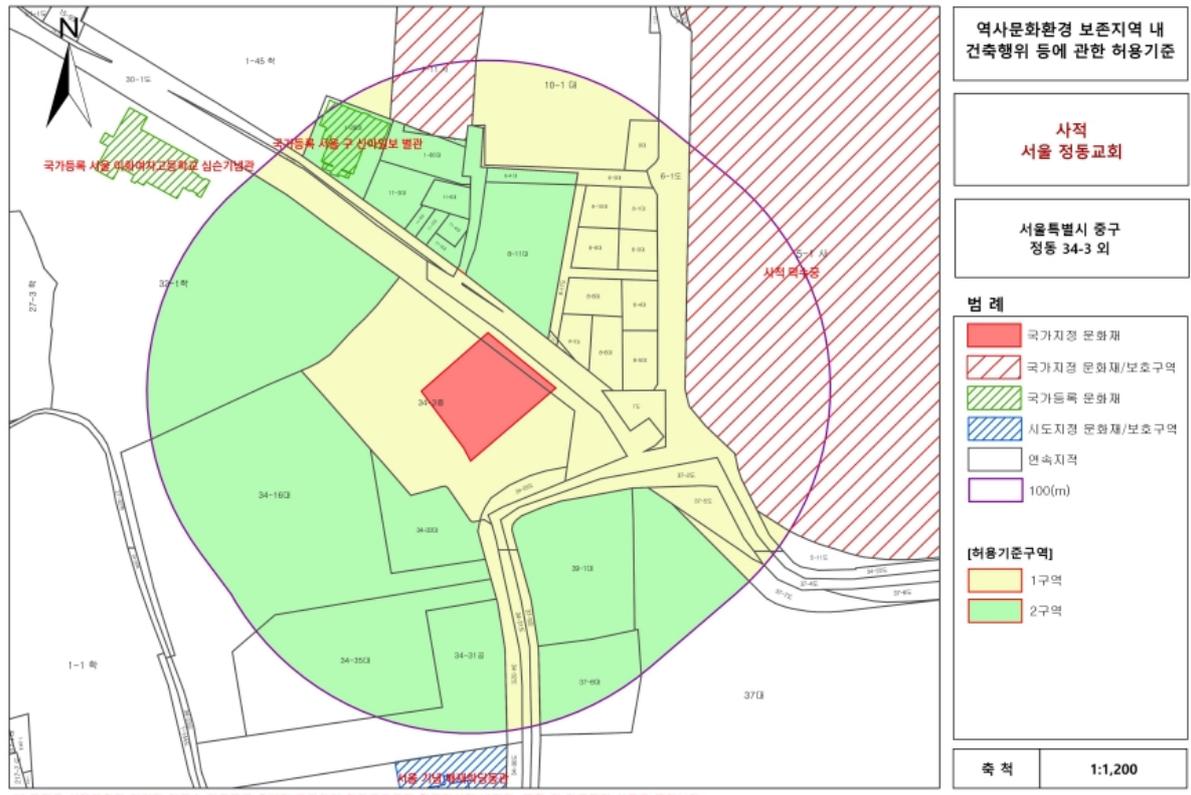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2-1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2-2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축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사적 「서울 정동교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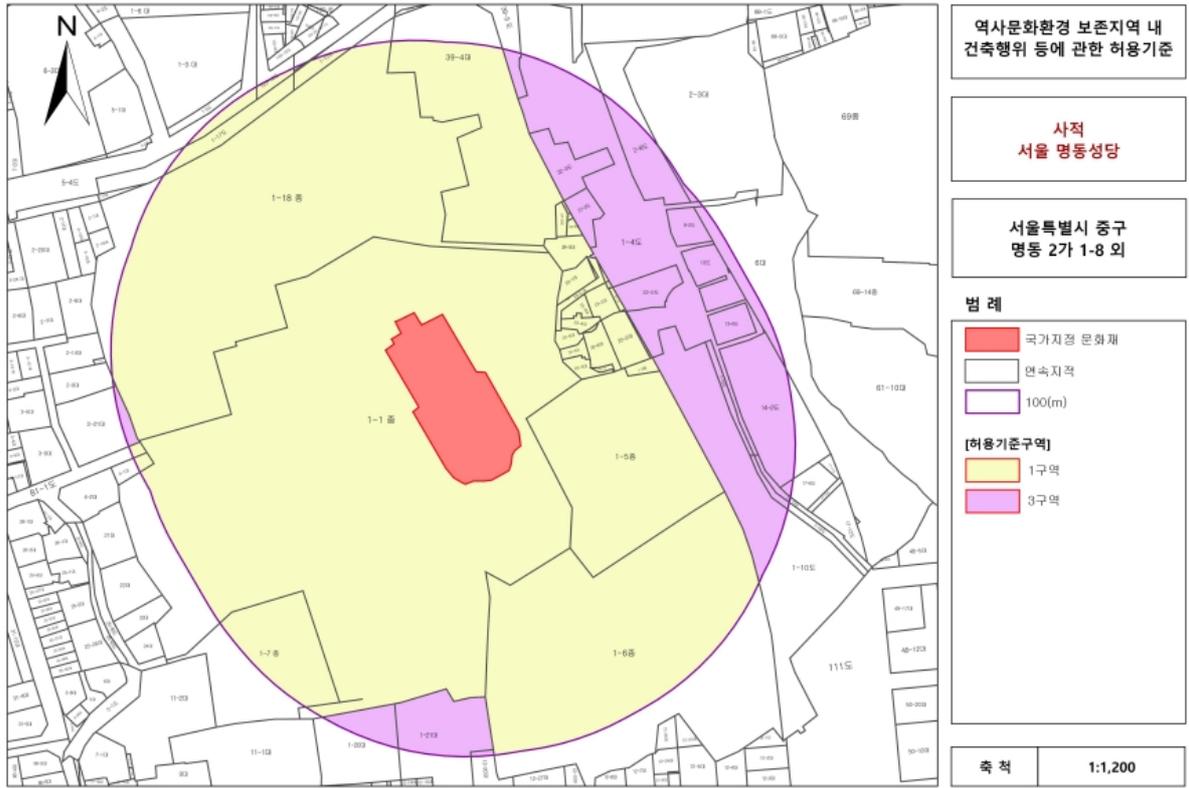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축척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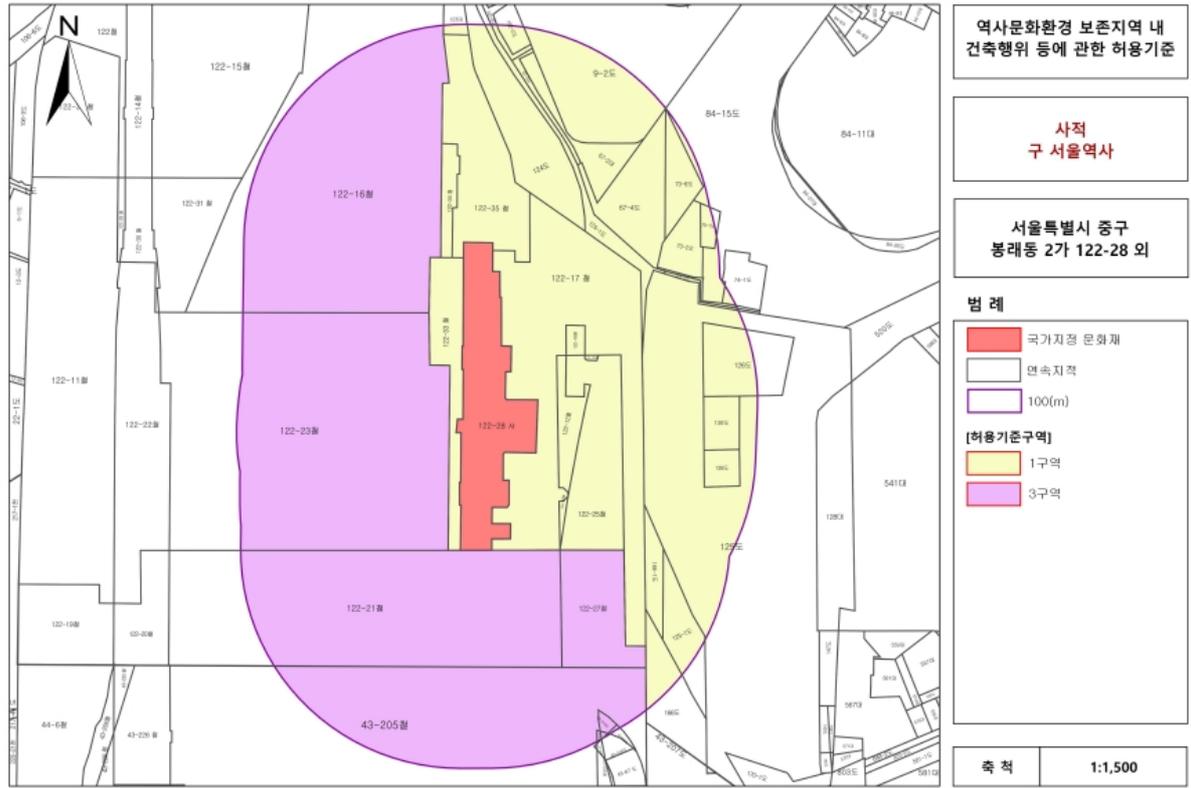
□ 사적 「서울 명동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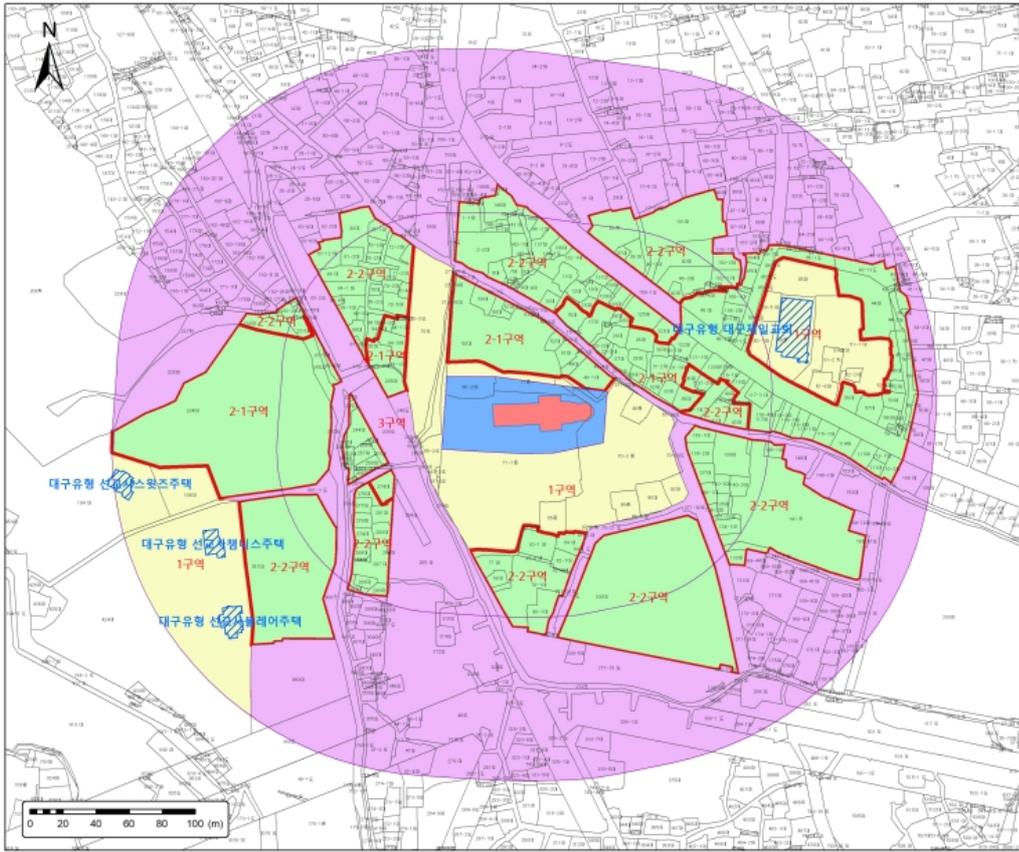
□ 사적 「구 서울역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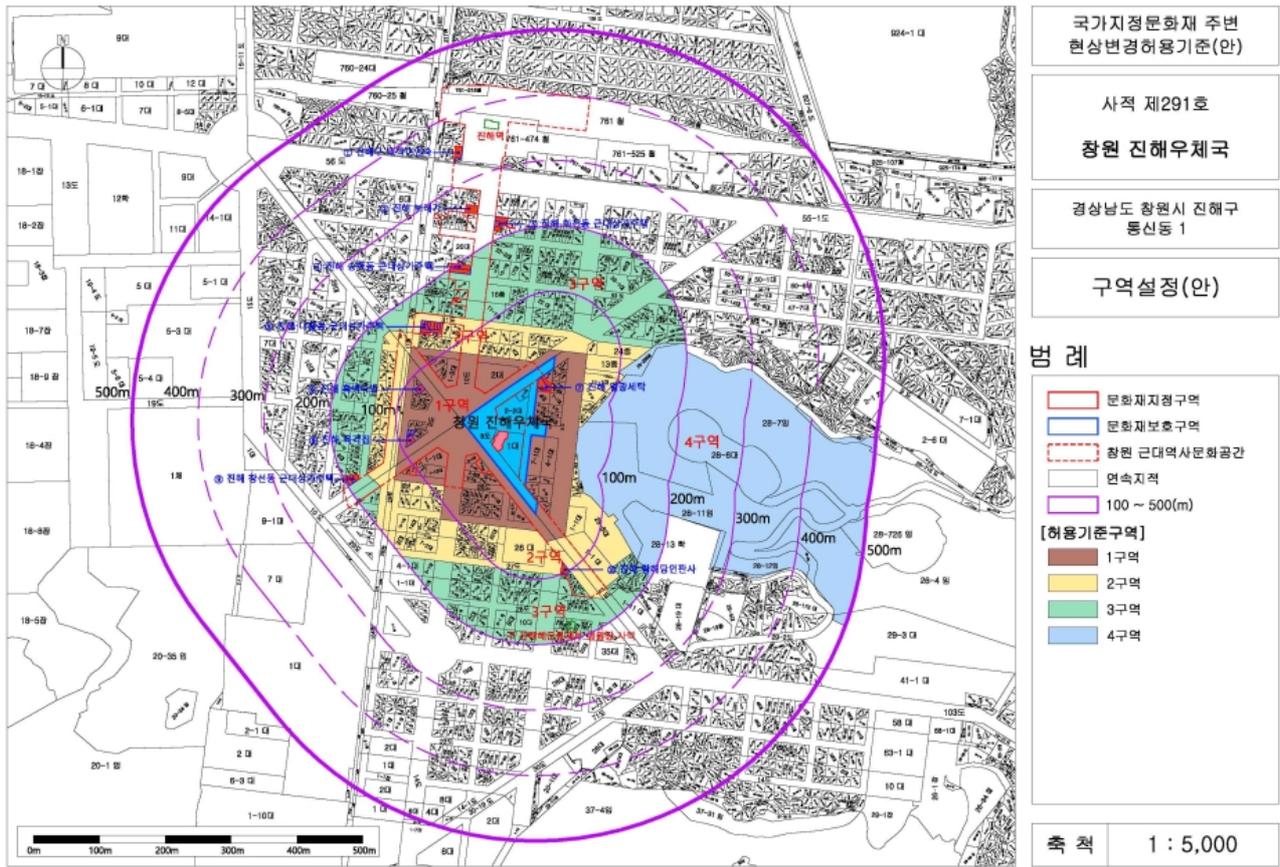
□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 검토	
제2구역	2-1	최고높이 14m 이하
	2-2	최고높이 26m 이하
제3구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기존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본 허용기준 고시 이전, 행위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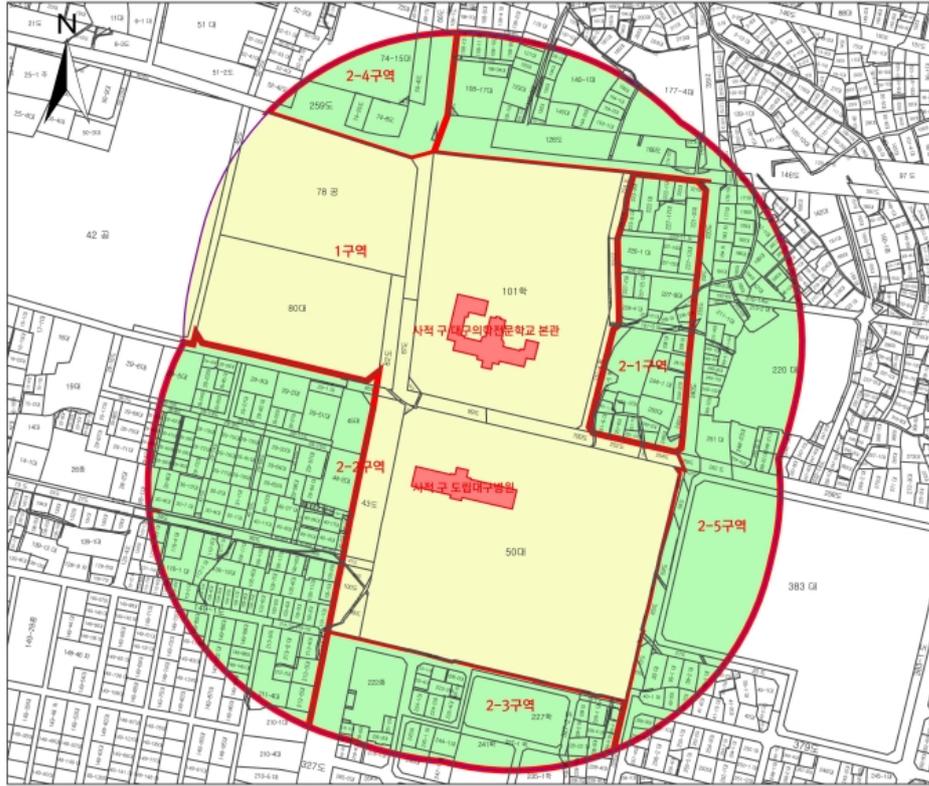
□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제2구역	최고높이 16m 이하	최고높이 19m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24m 이하	최고높이 27m 이하
제4구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2,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회함.(4구역 제외)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독립대구병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2-1	○ 최고높이 25m 이하
	2-2	○ 최고높이 37m 이하
	2-3	○ 최고높이 40m 이하
	2-4	○ 최고높이 50m 이하
	2-5	○ 최고높이 66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구도립대구병원 본관
사적
구도립대구전문학교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2가 101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연속지적
- 2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2-3구역
- 2-4구역
- 2-5구역

축척 1:2,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인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